

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

「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351호, 2014.3.2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5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
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 개정(14.5.23 시행) 등에 따라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용어변경

“건설기술관리법”을 “건설기술진흥법”으로 한다.

(안 제1조, 제79조, 제80조, 제88조)

“책임감리”를 “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”로 한다.

(안 제2조)

“설계자문위원회”를 “기술자문위원회”로 한다.

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20조, 제29조, 제39조)

“중앙위원회” 및 “중앙위원”을 각각 “중앙심의위원회” 및 “중앙심의 위원”으로 한다.

(안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21조의2, 제21조의3, 제25조, 제29조, 제30조)

“건설CALS/EC”를 “건설정보”로 한다.

(안 제3조, 제63조, 제65조, 제66조, 제67조, 제68조, 제69조, 제70조, 제71조, 제72조, 제73조, 제74조, 제75조, 제76조, 제77조, 제78조)

“분과위원회”를 “전문분과”로 한다.

(안 제65조, 제66조)

“감리”를 “건설사업관리”로 한다.

(안 제2조, 제79조, 제80조,

2. 법령인용조항 변경

제2조, 제17조, 제20조, 제21조의2, 제22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29조, 제40조, 제42조, 제57조, 제59조, 제62조, 제69조, 제77조, 제79조, 제80조, 제84조, 제88조

3. 자구수정

제17조제1의2호, 제29조제3항제2호바목, 제80조제1항제3호, 제19조제1항제8호

4. 타 행정규칙과의 중복으로 내용 삭제

제3조제6호, 제43조부터 제53조

5.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(안)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

제17조제10호, 제18조, 제29조제3항제2호라목

6.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설계점수 채점방식 기준 완화

제37조제2항제1호 중 “별도의 채점표”를 “배점표”로 하고,
“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”를 “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,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37조제2항제1호나목을 “나. 심의위원별 차등평가”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.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”

7.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의 전담기관 지정

제69조제1항 중 “한국건설기술연구원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

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연구원을 건설CALS/EC”를 “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정보화”로 하고 제69조제3항을 삭제한다.

8.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탄력운영

제72조 제1항 중 “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”를 “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”로 하고 “매년 2월말까지”를 “매년 1월말까지”로 한다.

제73조제1항 중 “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”로 한다.

9. 기타 누락, 오류 개정

제58조제1항 중 “검사를”을 “8일 이내에 검사를”로 한다.

제59조제6호 중 “표준안전관리비”를 “산업안전관리비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 1 장 총 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건설기술관리법령</u>(이하 “법” 또는 “영” 또는 “규칙”이라 한다)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(이하 “국가계약법” 또는 “국가계약법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설기술의 개발·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<u>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</u>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9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<u>규칙 제59조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<u>감리업무수행지침서</u>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6. “설계감리업자”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에서 규정한 설계감리업무를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를 말하며, 설계감</u></p>	<p>제 1 장 총 칙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건설기술 진흥법령</u>-----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</p> <p>----- <u>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</u>-----</p> <p>----- <u>영 제59조제5항</u>-----</p> <p>----- <u>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</u>-----</p> <p>제3조(정의)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현 행	개정안
<p><u>리업자에 소속되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“설계감리원”이라 한다.</u></p> <p><u>7. “건설CALS/EC 표준”</u>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·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이용하는 지침·요령·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.</p> <p><u>8. “건설CALS/EC 단체표준”</u>이라 함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<u>건설CALS/EC 표준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장 건설기술개발보상</p> <p>제8조(사용결정 및 통보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<u>설계자문위원회</u>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설계자문위원회</u>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</p>	<p><u>6. “건설정보표준”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7. “건설정보 단체표준”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건설정보표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장 건설기술개발보상</p> <p>제8조(사용결정 및 통보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기술자문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기술자문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정안
제21조의2 (소위원회 위원선정) 17조 제1호부터 5호까지, 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. 1.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위원 이 된다. 2. (생략) 3.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. 가. ~ 라. (생략)	제21조의2 (소위원회 위원선정)----- ----- 제10호 ----- ----- ----- 1.----- ----- 중앙심의위원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중앙심의위원 -- ----- --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3(소위원회의 심의방법) ① (생략)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,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·방법 등은 중앙위원회 의 심의절차·방법 등을 준용한다.	제21조의3(소위원회의 심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중앙심의위원회 ----- ----- ----- 중앙심의위원회 ----- -----
제22조(기술검토 등) ① (생략) 1.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, 제3호, 제5호, 제8호 부터 제10호 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. (생략) ② (생략)	제22조(기술검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제11호 ----- ----- ----- --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정안
제25조(심의의결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~ 2. (생략) 3. 재심의 :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(생략) ④ 소위원회가 제17조 제1호 부터 제2호, 제4호, 제5호, 제7호부터 제10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(이하생략)	제25조(심의의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중앙심의위원회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제11호 -----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26조(심의결과 조치등) ① 영 제13조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. ②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(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포함한다)에 의한다. ③ (생략) ④ 규칙 제5조 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.	제26조(심의결과 조치등) ① 영 제11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. ② 영 제14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규칙 제4조 ----- -----.

현 행	개정안
제27조(제출서류) 발주청장은 <u>영 제15조</u>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관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<u>영 제15조</u>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·개정 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 는 별지 제12호서식 2. <u>영 제15조</u>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 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	제27조(제출서류) ----- <u>영 제13 조</u> ----- ----- ----- 1. <u>영 제13조</u> ----- ----- ----- 2. <u>영 제13조</u> ----- ----- -----
제29조(<u>설계자문위원회 운영</u>) ① <u>영 제 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는 중앙 위원회</u> 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, 경관 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한다,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 원회·타 발주청 <u>설계자문위원회</u> 또 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 로 일시 임명·위촉할 수 있다. ② 국토교통부(본부) <u>설계자문위원 회</u> 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 다. ③ <u>설계자문위원회</u>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 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. 1. <u>영 제21조</u> 제2항(건축사법제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)의 규정에	제29조(<u>기술자문위원회 운영</u>) ① <u>영 제 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 앙심의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<u>기술자문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기술자문위원회</u> ----- ----- ③ <u>기술자문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1. <u>영 제19조</u>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정안
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심의한다 가. ~ 파. (생략) 2. <u>설계자문위원회는 영 제21조</u>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가. 국가계약법령에서 <u>설계자문위 원회</u>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. ~ 다. (생략) <신 설>	----- ----- ----- 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 2. <u>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</u> --- ----- ----- 가. ----- <u>기술자문위 원회</u> ----- ----- 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·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</u> <u>마.</u> (현행과 같음) <u>바.</u> ----- ----- <u>기술자문위원 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</u> <u>사.</u>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8조 부터 제28조 및 <u>영 제9 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은 기술자문위 원회</u>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.
제6장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제30조(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) ① <u>중앙위원회</u> 는 제17	제6장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제30조(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) ① <u>중앙심의위원회</u>

현 행	개정안
<p>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장은 <u>중앙위원회</u>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,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중앙심의위원회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7조(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) ①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제17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발주청장은 별표4 및 별표4-3의 ‘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’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<u>별도의 배점표를</u> 작성하여 소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, <u>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7조(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7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배점표를</u></p> <p>-----</p> <p>--, <u>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,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</u></p>

현 행	개정안
<p>가. 평가항목별 차등평가</p> <p><u>나.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< 신 설 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	<p><u>센트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가. 평가항목별 차등평가</p> <p><u>나. 심의위원별 차등평가</u></p> <p><u>다.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</u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9조(금지행위 및 감점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32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(또는 <u>설계자문위원회</u>)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	<p>제39조(금지행위 및 감점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기술자문위원회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</p> <p>제40조(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)</p> <p>① <u>법 제34조</u>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(<u>영 제119조</u>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, 이하 “관련단체”라 한다)는 별표6과 같다.</p>	<p>제7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</p> <p>제40조(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)</p> <p>① <u>법 제44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(<u>영 제65조</u>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정안
3. ~ 4. (생 략) 5. 법 <u>제26조의2</u>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6.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<u>표준안전관리비</u> 사용내역 7. ~ 8. (생 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 <u>제63조의</u> ----- ----- 6. ----- ----- <u>산업안전보건관리비</u> ----- 7. ~ 8. (현행과 같음)
제62조(준공표지설치확인)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<u>제43조</u>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	제62조(준공표지설치확인) ----- ----- ----- <u>제42조</u> ----- ----- -----.
제10장 건설CALs/EC표준의 관리	제10장 건설CALs/EC표준의 관리
제63조(표준의 제안 및 채택) ① <u>건설CALs/EC</u> 단체표준(이하 “단체표준”이라 한다)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준화의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.	제63조(표준의 제안 및 채택) ① <u>건설정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5조(표준화위원회) ① 전담기관에 <u>건설CALs/EC</u> 표준화위원회(이하 “표준화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표준화위원회에 <u>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</u> 를 둘 수 있다.	제65조(표준화위원회) ① ----- <u>건설정보</u> ----- ----- ----- <u>전문분과</u> ----- -----.
제66조(표준의 제·개정 절차) ② 표준화위원회는 회부된 단체표준	제66조(표준의 제·개정 절차) ② -----

현 행	개정안
안을 심의하고,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. 이 경우 표준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<u>분과위원회</u> 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의 기술적 검토 및 시험·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. ③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<u>건설CALs/EC</u> 단체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단체표준안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문분과</u> ----- ----- -----.
제67조(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)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<u>건설CALs/EC</u> 국가표준(이하 “국가표준”이라 한다)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	제67조(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)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<u>건설정보</u> 국가표준(이하 “국가표준”이라 한다)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
제68조(표준의 보급 및 적용) ② 각종 <u>건설CALs/EC</u>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·단체표준 등 상위 등급의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·개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. ③ <u>건설CALs/EC</u> 체계를 개발·구축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있는	제68조(표준의 보급 및 적용) ② -- <u>건설정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<u>건설사업정보</u>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정안
<p>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건설CALS/EC</u>표준이 동일한 위상의 다른 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u>건설CALS/EC</u>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.</p>	<p>-----</p> <p>④ <u>건설정보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건설정보</u>-----</p> <p>-----</p>
제 11 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	제 11 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
<p>제69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<u>법 제15조의2</u>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(이하 "<u>건설CALS/EC사업</u>")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<u>한국건설기술연구원</u>, <u>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연구원을 건설CALS/EC</u>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전담기관의 장은 <u>건설CALS/EC</u>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영 제29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한 업무 2. <u>건설CALS/EC</u>사업의 정책지원 3. <u>건설CALS/EC</u>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4. <u>건설CALS/EC</u>사업 출연금의 관 	<p>제69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 <u>법 제19조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"<u>건설사업정보화사업</u>"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한국건설기술연구원</u>을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영 제41조제2항</u>----- ----- 2.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 3.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 ----- 4.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

현 행	개정안
<p>리와 집행</p> <p>5. <u>건설CALS/EC</u>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·활용 및 관리</p> <p>6. <u>건설CALS/EC</u>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</p> <p>7. <u>건설CALS/EC</u> 관련기관·단체 및 업체와의 공동사업 수행</p> <p>8. 기타 <u>건설CALS/EC</u>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CALS/EC업무의 전담기관별 역할분담은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70조(출연금의 지정 등) ① <u>건설CALS/EC</u>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.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<u>건설CALS/EC</u>사업의 규모,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4회이내의 분할급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,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·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.</p> <p>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<u>건설CALS/EC</u>사업의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</p>	<p>-----</p> <p>5.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6.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7.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8. 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< 삭 제 ></p> <p>제70조(출연금의 지정 등) ①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정안
있다.	--.
제71조(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) ①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 연금은 <u>건설CALs/EC</u> 사업,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 한다.	제71조(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) ① ----- ---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72조(연도별 <u>건설CALs/EC</u>사업 계획의 수립)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부처, 학계, 연구소, 산업계등의 <u>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영 제29조 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<u>건설 CALs/EC</u>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당해 연도의 <u>건설CALs/EC</u> 사업계획을 <u>매년 2월말까지</u>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<u>건설CALs/EC</u> 사업의 기본목표 2. <u>건설CALs/EC</u> 사업의 추진방향 3. 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체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<u>건설 CALs/EC</u> 사업계획은 제77조의 규정 에 의한 <u>건설CALs/EC</u> 정례협의회(이 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	제72조(연도별 <u>건설사업정보화</u>사업 계획의 수립) ①----- ----- ----- <u>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41조 제1 항</u> ----- <u>건설 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<u>매년 1월말까지</u> ----- -----. 1.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2.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3. ----- -- ② ----- <u>건설 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-----.
제73조(<u>건설CALs/EC</u> 사업의 시행 등)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<u>건</u>	제73조(<u>건설사업정보화</u> 사업의 시행 등) ① ----- <u>건</u>

현 행	개정안
<u>실CALs/EC</u> 사업 계획에서 정한 기본 목표·추진방향·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 명·사업내용·예산내역 및 사업기 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<u>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</u> 을 받아 <u>건설CALs/EC</u>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	<u>실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</u> ----- ---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-----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<u>건설CALs/EC</u>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제2장의 규정에 의한</u> 건설기술연구·개발사업 비를 <u>건설CALs/EC</u> 구축사업비에 활 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발사업비의 집행절차 등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.	② ---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 소관의</u> ----- ---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.
③ 전담기관의 장은 <u>건설CALs/EC</u> 사 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.	③ ---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-----.
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<u>건설 CALs/EC</u> 사업의 진도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④ ----- <u>건설 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.
⑤ 전담기관의 장은 <u>건설CALs/EC</u> 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<u>건설 CALs/EC</u> 사업의 총괄책임자와 세부 사업별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, 세부사 업별로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	⑤ ----- <u>건설사업정보화</u> ----- ----- <u>건설사업 정보화</u> ----- -----.
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	⑥ -----

현 행	개정안
하는 경우에는 <u>건설CALs/EC</u>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건설CALs/EC</u> 사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·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.	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정보화
제74조(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) ① 전담기관의 장은 <u>건설CALs/EC사업</u> 이 종료된 후 사업의 성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, 평가결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를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<u>건설CALs/EC</u> 사업의 신뢰성, 안정성,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요비용은 개발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.	제74조(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) ①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정보화 ② 건설사업정보화
제75조(사업결과의 보고) ① 전담기관의 장은 <u>건설CALs/EC</u> 사업 세부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<u>건설CALs/EC</u> 사업에 대한 보고회 또는 시연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	제75조(사업결과의 보고) ①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정보화 ② 건설사업정보화

현 행	개정안
제76조(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) ① 전담기관의 장은 <u>건설CALs/EC</u> 사업 성과가 <u>건설CALs/EC</u> 체계구축에 원활히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76조(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) ①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정보화
제77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<u>건설CALs/EC</u>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간에 <u>건설CALs/EC</u> 사업간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각 기관간의 역할조정 등을 위하여 <u>건설CALs/EC</u> 정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77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규칙 제15조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정보화
제78조(전담기관의 세부지침)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<u>건설CALs/EC</u>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.	제78조(전담기관의 세부지침)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정보화
제12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	제12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
제79조(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)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, 인·허가, 입찰·계약, 시공, <u>감리</u> ,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	제79조(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) 건설사업관리

[별표 3-3] 제12조 중 “시행령 제23조”를 “시행령 제22조”로 한다.

[별표 7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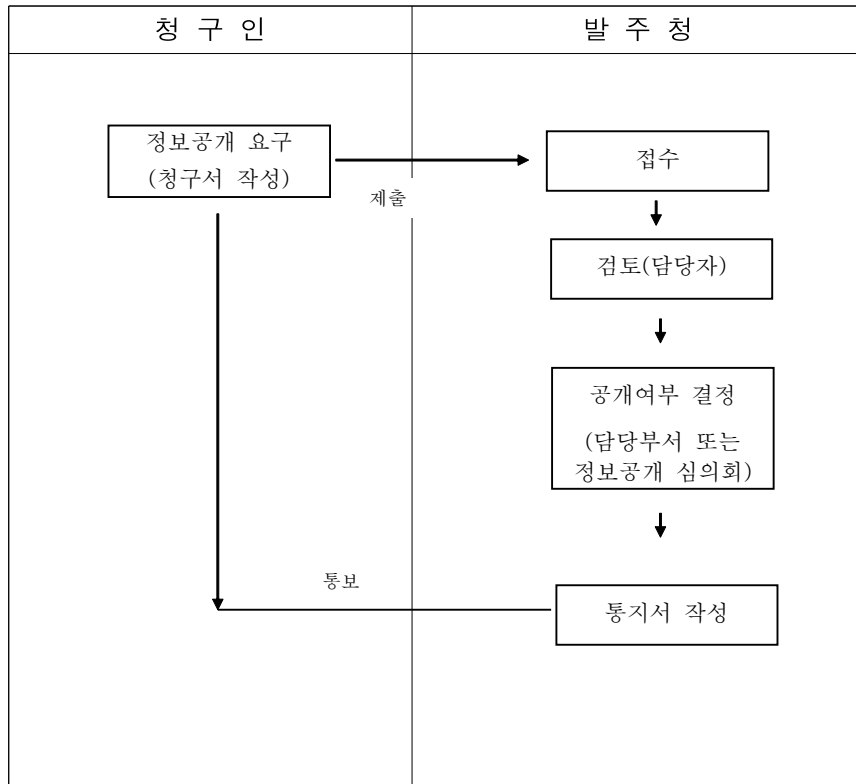
[별표 7]

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(예시)

분 야	내 용
실시설계	설계방침서, 과업수행계획서,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, 실시설계 용역보고서, 각종 영향평가보고서, 예산현황, 사업별 투자계획서, 계획노선 및 교차로 계획, 주민의견 조치결과 등
<u>건설사업관리</u> 및 공사착수	도로구역결정고시등 각종 인허가서, 용지 및 지장물조서, <u>건설사업관리</u> 착수신고서, <u>건설사업관리</u> 업무수행계획서, <u>건설사업관리</u> 용역계약서, 설계도면, 공사시방서, 물량산출서, 공사계약서, 착공신고서, 공사예정공정표, 품질보증계획서, 현지어건조사결과, 가시설물설치계획서 등
품질·안전관리	품질시험계획, <u>건설사업관리</u> 단검토의견서, 품질시험결과, 품질시험검사대장, 시공실태점검결과서, 검측체크리스트, 검측결과서, 매물부분검사서, 매물부분사진, 주요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, 정기안전점검결과, 정기 안전교육 결과, 분기별 안전관리실적 보고 등
시공관리	<u>건설사업관리기술지</u> 업무일지, 조직도, 작업공정표, 공법설명서, 장비·노무동원계획, 자재조달계획, 공사예정세부공정표, 정기공정보고, 현장실정보고, 공사중지 명령·보고서, 주요자재검사, 현장실정보고, 설계변경요청서, 변경설계도면, 설계변경시방서, 변경계약서 등
환경관리	환경관리대장, 환경관련평가서, 비산먼지·소음·진동등 환경관련신고서,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등
공사기성 및 준공	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, 공사기성 <u>건설사업관리</u> 조서, 예비준공검사결과서, 준공검사원, 준공설계도면, 준공 <u>건설사업관리</u> 조서, 시공단계사진앨범, 품질시험·검사성과총괄표, 안전관리점검총괄표, 사용재료총괄표, 매물부분검사기록부, 준공검사조서, 준공사진첩 등
인수인계 및 유지관리	운영지침서, 시운전결과보고서, 품질시험·검사성과총괄표, 기자재구매서류, 공사관련기록부, 시설물인수·인계서, <u>건설사업관리</u> 일지, 시설물 현황 및 유지·보수 실적,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보고서, 유지관리 지침서 등

[별표 9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9] 정보공개의 처리절차



※ 비고 :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, 발주청은 동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			
신청인	① 상호 또는 명칭		② 면허 또는 등록 번호
	③ 주 소	(전화 :)	
	④ 대표자성명	⑤ 생년월일	
공사개요	⑥ 공사명	⑦ 공사기간	
	⑧ 계약금액	⑨ 발주처	
	⑩ 공사위치		
신청내용	⑪ 신청건수	⑫ 절감액	
<p>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.</p>			
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(인)</p>			
(발주관서장)		귀하	

[별지 제3호서식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			
신청인	① 상호 또는 명칭		② 면허 또는 등록 번호
	③ 주 소	(전화 :)	
	④ 대표자성명		⑤ 생년월일
공사개요	⑥ 공사명		⑦ 공사기간
	⑧ 계약금액		⑨ 발주처
	⑩ 공사위치		
신청내용	⑪ 신청건수		⑫ 절감액
승인내용	⑬ 승인건수		⑭ 절감액
<p>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을 불임과 같이 승인(기각)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발주관서장) (인)</p> <p>붙임 : 개선제안공법 승인(기각) 내역서 1부.</p>			

[별지 제15호서식]을 삭제한다.

[별지 제16호서식]을 삭제한다.

[별지 제17호서식]을 삭제한다.

[별지 제18호서식]을 삭제한다.

[별지 제19호서식]을 삭제한다.